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알면 쉬워지는 연구관리 Point 100

과제 신청에서 연구결과물 제출까지

2012. 11

교육과학기술부 NRF 한국연구재단

발 간 취 지

과제 신청에서 논문 제출까지의 연구관리 용이성 마련

- 연구관리 과제 신청부터 결과물 제출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상담사례 및 도움말 등을 제시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

상이한 사업별 기준 한방에 날려 버리자

- 다양한 사업별 연구관리 기준을 년도 및 사업별 정리로 한 눈에 쏙쏙
- 담당 사업만 알던 연구관리 기준을 전 사업의 기초 기준 습득

연구 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 양성

- 본 책자 숙지로 연구 관리 실무 지식 및 처리 능력 향상
- 외부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교육자 및 피교육자의 능력 배양

목 차

제 1 장 과제 신청

1. 국외국대학 소속 외국인 교수의 사업 신청 가능 여부 ····· 3
2. 1인 연3과제(1책3공) 참여제한 의미 및 적용 범위 ····· 3
3. 개인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가능 여부 ····· 4
4. 직장이 있는 공동연구원의 연구 참여 가능 여부 ····· 5
5. 연구과제 중복 지원 ····· 5
6.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자의 과제 신청 가능 여부 ····· 5
7.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시 공동연구원 포함 여부 ····· 6
8. 대학 조교의 연구보조원으로 과제 참여 가능 여부 ····· 6
9. 휴학생의 과제 참여 가능 여부 ····· 7
10. 시간강사지원사업의 타사업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 7
11. 국책연구소 보고서의 논문 또는 저서의 실적 인정 여부 ····· 7
12. 대학 부설연구소 인정 범위 ····· 8
13. 분과별 공동연구원의 연구책임자 인정 가능 여부 ····· 8
14. 과제 연구책임자의 집단연구의 공동연구원 참여 가능 여부 ····· 8
15. 박사급연구원이란? ····· 9
16. 학술지 등재 이전 논문 실적 인정 여부 ····· 11
17. 게재예정서 제출시 업적 인정 여부 ····· 11
18. 대학중점연구소 행정요원 인건비 지원 방법 ····· 11
19. SSK사업 연구책임자의 신청 자격 ····· 11
20. BK 및 WCU 사업단장의 SSK사업 연구책임자 신청 가능 여부 ····· 12
21. SSK사업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 의무 여부 ····· 12
22. 퇴직이나 휴직기간도 재직기간 5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2
23. 외국대학 근무경험도 신청요건의 5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3
24. 일반연구, 정액연구 동시 신청 가능 여부 ····· 13
25. 기 수혜자 신청 가능 여부(재 지원 가능 여부) ····· 13

26.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사업 취지 ····· 14
27.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신청 가능 여부 ····· 14

제 2 장 평가 및 연구계획 변경

28. 네거티브평가자 제도란? ····· 17
29. 사업별 평가 단계 ····· 17
30. 미선정 과제의 이의신청 절차 ····· 20
31. 연구보조원 변경 ····· 21
32. 연구보조원의 인원 축소 및 인건비 조정 가능 여부 ····· 21
33. 연구보조원 유학시 연구 진행 가능 여부 ····· 21
34.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절차 문의 ····· 22
35. 연구책임자 해외 장기 체류시 승인 여부 ····· 23
36. 공동연구원 변경 절차 ····· 23
37. 해외 장기 체류 공동연구원의 과제 참여 가능 여부 ····· 23
38. 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시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행정절차 ····· 24

제 3 장 연구비 관리

39. 인건비 줄여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 한지 ····· 27
40. 외국대학 석사 학위자의 석사급 연구보조원 채용 가능 여부 ····· 27
41. 전임연구원수당을 연구보조원수당으로 전용 가능한지 ····· 28
42. 신분 변동된 연구책임자(시간강사)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28
43. 직접비의 인건비 전용 가능 여부 ····· 28
44. 인건비 감액하여 연구활동비로 전용 가능 여부 ····· 29
45. 박사급 연구원이 신규과제 선정시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방법 ····· 29
46. 시간강사 연구보조원 참여 가능 여부 ····· 29
47. 연구보조원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30

48. 데스크탑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전환 구매 가능 여부 ····· 30
49. 연구계획서 미계상 범용성 연구기자재 구입 가능 여부 ····· 30
50. 회의비 집행 후 후식비 지급 가능 여부 ····· 31
51. 해외학회 참석 취소시 출장비 정산 ····· 31
52. 논문게재료 지급 기한 ····· 31
5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사용 가능 여부 ····· 32
54. 연구보조원 논문게재비 지원 가능 여부 ····· 32
55. 동일 소속 교수 회의수당 지급 가능 여부 ····· 32
56.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가능 여부 ····· 33
57. 외국대학 전임교수 자문비 지급 ····· 33
58. 야근식대 집행 가능 여부 ····· 33
59. 통신비 계상 가능 여부 등 ····· 34
60. 연구실 환경유지비 사용 가능 여부 ····· 34
61. 연구수당 지급 지준 ····· 34
62. 연구수당 중복 수혜 가능 여부 ····· 35
63. 2011년 계속과제의 연구수당 인상액 지급 가능 여부 ····· 35
64. 당초 연구계획 미계상 연구수당 예산변경 후 지급 가능 여부 ····· 35
65. 국외공동연구원 연구수당 한꺼번에 송금 지급 가능 여부 ····· 36
66.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의 기관지원금 집행 기준 ····· 36
67. 기관지원금 잔액 이월 가능 여부 ····· 36
68. 학술연구교수사업의 간접비 지원 여부 ····· 37
69. 간접비 책정 방법 ····· 37
70. 연구비에 간접비 포함 여부 및 간접비 용도 ····· 37
71. 계속과제 간접비 적용 기준 ····· 37
72.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의 잔액 이월 가능 여부 ····· 47
73. 2011년 선정 계속과제의 정액과제 연구비 집행 ····· 47
74. 정액과제 연구비 정산 여부 ····· 48

제 4 장 사후관리

75.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종류 및 제출기한 ····· 51
76. 연구시작 후 6개월 이내 게재된 논문의 성과 인정 여부 ····· 51
77. 연구결과보고서를 논문으로 대체 가능 한지 ····· 52
78.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의 의미 ····· 52
79.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제출기한 ····· 52
80.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 53
81. 교체된 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 54
82. 게재 예정 논문도 성과로 인정가능한지 ····· 54
83. 연구결과물의 e-book 인정 여부 ····· 54
84. 연구결과물 사사표기 ····· 55
85. 결과물 미제출로 제재조치 받은 경우 제재 해지 가능 여부 ····· 55
86. 최종결과물(논문) 제출기한 연장 가능 여부 ····· 56
87. 다년과제의 논문제목 부제 사용 여부 ····· 57
88. 단독연구의 경우 공동논문 게재 가능 여부 ····· 57
89. 논문 제목 변경 가능 여부 ····· 57
90. 사시표기 병기 가능 여부 ····· 58
91. 사시표기 누락시 행정절차 ····· 58
92. 사업별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및 편수 ····· 59
93. 사업별 사시표기 방법 ····· 69
94.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 주저자(교신저자) 표시 방법 ····· 76
95. 공동연구 전원 저자 참여시 제출 의무 이행 여부 ····· 76
96. 연차평가 지원 중단시 신규 과제 신청 가능 여부 ····· 76
97. 논문 별쇄본 필수 제출 여부 ····· 77
98. 번역과제 판권 출판사 귀속 여부 및 번역자 인세 지급 방법 ····· 77
99. 우수논문지원사업 연구비 지급 방법 ····· 78
100. 연구수행확인서 발급방법 문의 ····· 79

제 5 장 부록 : 규정 ····· 81

제 1 장

과 제 신 청

제 1 장 과제 신청

상담사례

1 외국대학 소속 외국인 교수의 사업 신청 가능 여부

Q 질의

현재 중국 모 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국대학 소속의 외국인 교수일 경우 어떠한 사업들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응답

외국대학소속의 외국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동연구원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KRI(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에 연구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국내대학의 소속된 외국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1인 연3과제(1책3공) 참여제한 의미 및 적용 범위

Q 질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1인 연 3과제(1책 3공) 참여제한의 의미와 적용 범위는?

A 응답

1인 연 3과제의 의미는 공동연구원 참여를 포함하여 총 3과제 이내에만 참여 가능하며, 연구책임자로서 1과제만 참여 가능합니다. 적용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및 인문학진흥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등)의 하위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신청년도 12.31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일반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 우수학지지원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연구자네트워크, 사회과학 중장기 아젠다 개발),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우수저서 트랙),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산학협력형 시범사업), 인문주간 및 강좌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개인의 학술지원사업 참여 가능 여부

Q 질의

개인자격으로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참여할 수 없는지?

A 응답

개인자격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법령(法令)"은 법률과 명령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외에 명령, 규칙, 조례(條例), 자치규칙(自治規則), 국회규칙(國會規則)이나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한다. ○ "시행령(施行令)"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입니다. ○ "시행규칙(施行規則)"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 ○ "행정규칙(行政規則)"은 행정주체가 제정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관한 조직·활동을 규율하고 잇으며 훈령(訓令), 예규(例規), 고시(告示), 지침(指針)의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은 이중 훈령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훈령(訓令)"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훈시(訓示)나 명령(命令)입니다. ○ "예규(例規)"는 관례와 규칙 즉 관례(慣例)로 되어 있는 규칙(規則)을 말한다. ○ "고시(告示)"는 국가기관등에서 관보등을 통하여 어떤 일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을 말한다. ○ "지침(指針)"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업무처리의 방침입니다.

4 직장이 있는 공동연구원의 연구 참여 가능 여부

Q 질의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을 공동연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현업에 계신분의 도움이 필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응답

공동연구원의 경우 참여 가능한 자격요건(연구실적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고 계신분이 참여가 가능하며, 연구수당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연구과제 중복 지원

Q 질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와 저술출판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지요?

A 응답

2012년의 경우 "상반기 공모 사업"내에서는 1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신진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저술출판지원,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자의 과제 신청 가능 여부

Q 질의

2010 신진교수 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논문이 아직 게재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2012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지원할 수 있나요?

A 응답

2012년도 요강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청을 제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로 연구관리통합시스템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시 이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물 미제출자 및 제재자는 과제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7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시 공동연구원 포함 여부

Q 질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공동연구원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응답

본 사업은 공동연구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보조원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8 대학 조교의 연구보조원으로 과제 참여 가능 여부

Q 질의

대학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학사졸업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가능한지요? 사업안내에 따르면, "학사급 연구원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학사급 연구원이란 이미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학사졸업한 조교도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대학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학사졸업생은 학교에서 인건비를 이미 받고 있으므로 취업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보조원으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심의(審議)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이다. 심의는 어떠한 회의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정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즉, 의회정치는 이른바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에 의한 의회의 충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타협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시대에는 정당간부에 의한 평의원에 대한 의견의 통제도 없었고, 토론 종결이라는 제도도 없어서 이른바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투표'로써 심의의 원리가 관철되었다.

9 휴학생의 과제 참여 가능 여부

Q 질의

연구보조원이 연구시작일 시점에 휴학한 경우도 과제에 참여 가능한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1에 의하면 연구보조원은 졸업, 휴학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더라도 선정 당시의 신분을 과제 종료시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처음(연구개시)부터 휴학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10 시간강사지원사업의 타사업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Q 질의

시간강사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사업(예-지식경제부 등)에서 인건비를 받는 것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응답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시간강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사업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자가 본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사업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1 국책연구소 보고서의 논문 또는 저서의 실적 인정 여부

Q 질의

학술저서의 일반기준은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소의 보고서 중에는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전문적이고 분량도 상당하여, 학술저서의 가치가 있으나, 국책연구소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반 출판사에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국책연구소의 학술연구보고서가 ISSN이 있으면, 저서로 포함할 수 있나요?

A 응답

문의하신 국책연구소 보고서는 다른 사업의 경우 논문 또는 저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이 독창적이며 전문적 이라고 하시니 우수학자지원사업의 1200% 업적으로 하여 신청을 하시면 심사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SSN은 정기간행물 등록 번호로 이 번호가 학술적 가치의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서는 ISBN을 부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책연구소 보고서를 저서로 볼 것인지는 심사과정에서 검토 될 것입니다.

12 대학 부설연구소 인정 범위

Q 질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인문한국지원사업"의 경우 신청대상이 대학부설연구소인데 대학부설연구소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 대학의 경우, 대학의 연구기관이 "대학부설연구기관"과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 구분되며 두 기관 모두 대학의 직제로 인정된 연구기관입니다. 교책중점연구기관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인문한국지원사업" 등 대학부설연구기관대상의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응답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대학 부설연구소로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신청요강상에서 명시된 문구로는)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인문사회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교책중점연구기관 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지원팀의 대학부설연구소로 인증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분과별 공동연구원의 연구책임자 인정 가능 여부

Q 질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외에 "공동연구원을 각 전공분야 분과책임자로 하여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도록 할 예정인데, 이 경우 분과별 공동연구원을 연구책임자로서 인정 가능한지요?

A 응답

본 사업에서 연구책임자는 과제당 1명입니다. 분과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시는 것은 연구 팀 내부 절차로 생각되며, 재단에서 과제 내의 각 분과별 연구책임자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4 과제 연구책임자의 집단연구의 공동연구원 참여 가능 여부

Q 질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가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공동연구자로 동시에 과제에 참여 가능합니까?

A 응답

개인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시면서 공동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인건비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15 박사급연구원이란?

Q 질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박사급연구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A 응답

어떠한 과제(기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않거나 일정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로 제한합니다. 연구책임자로 신청 시 연구실적(3편)이 있어야 하며, 인건비는 월170만원 이내(총 금액 2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등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박사급연구원과 전임연구인력

- 박사급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의미하며, 인건비를 부사업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전임연구인력은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제 참여시 전용공간 1인당 4.95㎡(1.5평)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맺은 과제에서 연간 27백만원 내외의 인건비를 받는 상근 인력을 의미함. 현재 아래 사업에 따라 인건비 단가 및 외부 강의시간 등의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간 2천7백만원 이상의 인건비와 퇴직금 및 4대보험료(기관지원분)를 지급하고 강의는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주요 사업의 전임연구인력 충족 조건>

사업명	충족 조건
한국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	•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의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연간 2천7백만원(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을 산정할 수 있음 •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토대기초연구 지원사업	• 박사학위 소지자(**또는 동등이상의 전문가 참여 가능**)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사업명	충족 조건
토대기초연구 지원사업	• **연간 2천7백만원(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9%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자에 한함(반드시 대학총장의 채용발령) •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중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25% 이상이어야 함** • 신청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이 허락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1인당 4.95㎡ 이상 확보 • **연 2,700만원 이상 지급** 및 수당의 최대 9%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학제간융합 연구지원사업	•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 (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2천7백만원(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9%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인문한국 지원사업	•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연구전임인력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출강하더라도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함(단,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 • 대학에서는 일정 이상의 연구공간 확보 및 대학과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 보장 (최소 1인당 4.95㎡ 이상) • 한국연구재단 전임연구인력 수준 (**연 2,700만원 이상**) ※ 연구성과에 따라 기준액의 10% 이내 인센티브 지급 가능

16 학술지 등재 이전 논문 실적 인정 여부

Q 질의

과제 신청시 연구실적은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재되기 이전 논문을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합니까?

A 응답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재된 이후의 논문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17 게재예정서 제출시 업적 인정 여부

Q 질의

게재 예정인 논문, 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 업적 및 자격으로 인정 됩니까?

A 응답

게재예정서 제출이 가능한 게재예정논문의 경우에는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에도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8 대학중점연구소 행정요원 인건비 지원 방법

Q 질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행정요원은 연구소에서 뽑고, 중점연구소 예산에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요원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응답

연구비에는 행정요원 인건비를 책정하실 수 없으며, 현금으로 확보된 대응자금 등으로 행정요원의 인건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19 SSK사업 연구책임자의 신청 자격

Q 질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에 한정됩니까?

A 응답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분류표상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속학과와 상관없이 KRI(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 상에 연구분야가 사회과학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 BK 및 WCU 사업단장의 SSK사업 연구책임자 신청 가능 여부

Q 질의

BK 및 WCU사업단장은 SSK사업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A 응답

BK, WCU사업단장은 동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하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점연구소 및 HK 연구책임자는 SSK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점연구소의 세부과제 책임자는 동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합니다.

21 SSK사업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 의무 여부

Q 질의

SSK사업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는 의무사항 인가요?

A 응답

소형 3년차에 박사수료생(ABD)을 1년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연수대상자가 없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평가에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 계획이 있는 팀은 3년차 연구비에 25백만원을 추가 해야합니다.

22 퇴직이나 휴직기간도 재직기간 5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질의

2005년도에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년간 재직하다가 퇴직 후 2012년도에 4년제 대학으로 새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응답

가능합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기준은 전임강사로 임용된지 “5년 이내”로 전문대 전임강사 후 퇴직기간(전임강사 직위를 상실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로 대학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2012년도에 신규로 임용되었다면, 2005년 3월~2007년 2월까지 2년 경력과 2012년도의 경력을 합산하면 5년 이내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수시작 전에 공문으로 퇴직기간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하며, 미증빙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휴직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3 외국대학 근무경험도 신청요건의 5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질의

외국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국내 대학으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의 근무경력도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경력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지요

A 응답

외국대학의 교수경력은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국대학에 재직하다가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에는 국내대학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4 일반연구, 정액연구 동시 신청 가능 여부

Q 질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 시 일반연구, 정액연구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응답

한 연구자가 일반연구와 정액연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연구와 정액연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5 기 수혜자 신청 가능 여부(재 지원 가능 여부)

Q 질의

2012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만, 내년도(13년도) 사업에 재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응답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기 수혜자의 신청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진연구자분들은 최대 5번까지 본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도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초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의 연구자이어야 합니다.
2.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다른 과제가 없어야 합니다.(신청년도 내 종료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26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사업 취지

Q 질의

우수논문지원사업의 경우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학술논문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취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응답

사업취지는 인문사회분야의 자유로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평가한 후 우수한 논문에 대하여 포상(award) 성격으로 정산 절차 없이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인문사회분야에 한하여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7년도에 정규 사업화 하였습니다.

27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신청 가능 여부

Q 질의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재단 등재학술지 말고, 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도 신청 가능합니까?

A 응답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년도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2012년의 경우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국제학술지(SSCI, A&HCI, SCI&SCIE, SCOPUS 등)에 게재된 인문사회분야의 학술논문(공동·단독)의 제1저자 (부득이한 사유로 제1저자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받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국내·외로부터 연구비(교내연구비 포함)를 지원받은 과제는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인센티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한다」·「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할 수 있는 權能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제 2 장

평가 및 연구계획 변경

제 2 장 평가 및 연구계획 변경

상담사례

28 네거티브평가자 제도란?

Q 질의

2012년부터 네거티브 평가자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견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과제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 네거티브평가자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응답

네거티브란 평가자 제도는 과제신청자의 소속기관이나 특정 연구주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지닌 평가자의 사전 배제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중견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온라인에 과제를 신청할 때 과제신청자의 신청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평가자 1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평가자는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29 사업별 평가 단계

Q 질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세부사업별 평가단계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응답

2012년 각 사업별 평가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학술연구교수]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PM Review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시간강사연구 지원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등	전공평가단
			PM Review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사업명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PM Review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PM Review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융합연구과제의 전공평가 : 패널평가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패널평가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우수학자지원 사업	1단계	추천심사		기준에 적합하고 우수한 학자를 학회별 2인 이하 추천	등재학술지 발행 학회
	2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요건심사단 (PM)
	3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저술계획서 및 연구업적 평가	위원회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원회평가	온라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	위원회
	4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저술출판지원 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PM Review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우수논문지원 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평가		논문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토대연구지원 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평가 ※ 패널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과 제수의 3배수 내외로 발표대상 선정 ※ 평가배점 : 패널평가(50%)+발표평가(50%)	
			발표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신청완료 후 과제수를 고려하여 패널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음				

사업명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소 육성 · 운영계획, 연구진 수행의지.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계획 등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발표평가 : 면담심사 방식으로 진행함				
학제간융합연구 지원사업	가. 씨앗형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나. 새싹형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씨앗형 연구 결과 평가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사업	1단계	요건심사		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재단
	2단계	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인문한국 지원사업 (HK)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평가 – 공통 : 연구아젠다 및 연구기반 – 해외지역분야의 경우, 지역특성에 기초한 종합연구계획 포함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한국사회기반 연구지원사업 (SSK)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 면담평가는 선정과제의 1.5배수 이내 선정함 ※ 평가배점 : 패널평가(70%) + 면담평가(30%)	전공평가단
			면담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사회과학중장기 Agenda 개발연구 지원사업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30 미선정 과제의 이의신청 절차

Q 질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과제를 신청했는데, 제 과제가 선정이 안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전문가 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 계	주관	업무 내용	최종결재
1 선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결과안내	지원팀	◦ 예비선정 결과 등 홈페이지 공지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연구계획서 평가 결과에 한함(연구비 및 연구기간 평가, 심사평가 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안내)	지원팀장
	이의신청	주관 연구기관	◦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평가결과 이의신청(처리규정 제18조3항)	산학협력단장 등
2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기본계획 수립	접수	지원팀	◦ 공문 접수(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및 이의신청서) ◦ 감사실(민원) 경유 접수	지원팀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팀	◦ 이의신청 처리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평가의뢰	지원팀	◦ 소관 학문단에 처리요청	지원팀장
3 재평가 여부 검토	재평가 여부 판단	학문단	◦ 재평가 기준 및 대상과제 등 협의(PM협의체) ◦ 단장 또는 전문위원의 중복성 여부 등 검토 실시 ※ 검토의견서 작성	학문단장
4 정밀검토	실시계획 수립	학문단	◦ 정밀검토 실시계획 수립(평가위원 구성 포함)	학문단장
	평가실시	학문단	◦ 이의신청 정밀평가 실시	학문단장
	결과통보	학문단	◦ 평가결과 지원팀 통보	학문단장
5 평가결과 처리	결과보고	지원팀	◦ 이의신청 결과보고(학문단장 협조 결재) ※ 평가조정시 이사장 결재	본부장 or 이사장
	결과통보	지원팀	◦ 홈페이지 통해 최종 선정 과제 공지 ◦ 주관기관으로 처리 결과 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팀장

31 연구보조원 변경

Q 질의

기존 계획서 상의 연구보조원에서 다른 연구보조원으로 변경 등록할 경우, 별도 처리 사항이 있는 것인지, 내부 승인만 거치면 되는지요?

A 응답

연구보조원 변경은 전산스시템오름(개인연구)에서 로그인 하신 후 연구계획 변경에서 연구보조원 변경을 신청하시고,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구보조원 변경은 재단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32 연구보조원의 인원 축소 및 인건비 조정 가능 여부

Q 질의

당초 사업 신청을 할 때 5명의 연구보조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혹시 이 인원을 3~4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인건비 총액은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에 1인당 받는 인건비가 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금액이 상승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A 응답

연구보조원의 경우 학사/50, 석사/100, 박사/150만원 이내로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십니다. 연구보조원은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과 상의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3 연구보조원 유학시 연구 진행 가능 여부

Q 질의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보조원 중 한명이 유학을 가게 되어,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구보조원으로 연구를 진행해도 되는 지요? 즉, 연구보조원이 유학을 가게 되면 연구원 자격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응답

연구보조원은 국내연구기관 소속인 자만 참여가 가능하며,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는 다른 연구보조원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34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절차 문의

Q 질의

2012년도 중견연구자원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당시에는 A대학 소속이었으나 9월 1일자로 B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소속대학의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응답

주관연구기관변경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자 신청	⇨	변경 전 소속대학의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승인처리	⇨	변경 후 소속대학에서 이관처리완료 공문제출	⇨	재단승인

1. 연구자: 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연구계획변경(주관기관변경)신청
2. 변경 전 대학
   가. 연구자가 위의 절차를 이행하면 동일한 시스템에 접속하여 승인
   나. 연구자가 집행 후 남은 금액(연구비)과 간접비 잔액을 '변경 후 기관'인 B대학과 상의 하여 이관절차를 진행합니다. (별도 재단 보고절차 없음)
3. 변경 후 기관 : 연구비 이관을 완료한 후 연구재단으로 '이관결과보고' 공문 알림
4. 재단승인

행정용어 도움말

「승인」·「협의」·「동의」	「承認」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고, 「協議」는 주로 대등자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쓰이며, 「同意」는 對等者間의 경우에도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의 경우에도 쓰여지나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동의와 승인은 상대방의 긍정적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나 협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協議」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35 연구책임자 해외 장기 체류시 승인 여부

Q 질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는 연구책임자의 해외 장기 체류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연구책임자가 연구년 등의 사유로 해외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별도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연구진행에 무리가 없다면 해외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6 공동연구원 변경 절차

Q 질의

2010년도 선정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올린 후, 주관연구기관이 승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변경에 따른 공문도 송부해야 하나요? 공동연구원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응답

공문은 별도로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산스시템에 연구계획변경신청 시 관련문서들 스캔하여 같이 첨부하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립니다. 공동연구원 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1)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 (2)연구원 교체 확인서, (3)연구참여 동의서, (4)연구수행 역할분담표(변경전, 변경후), (5)연구실적물 목록(최근5년간), (6)대표연구업적 표지·목차·초록, (7)사직서(변경전 공동연구원)입니다. 다만, 5~7번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토대연구지원사업, SSK지원사업, 인문한국지원사업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해외 장기 체류 공동연구원의 과제 참여 가능 여부

Q 질의

책임연구원 1인과 공동연구원 4인 (교수 3인 + 전임연구인력 1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으로 SSK사업을 진행 중에 공동연구원 한 분께서 중국에 장기 체류(1년 이상)하셔야 할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특별히 제출해야할 추가 서류가 있는지요?

A 응답

참여연구원이 연구년이나 기타 사유로 해외 장기 체류할 경우도 동 사업에 참여는 가능하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38 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시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행정절차

Q 질의

현재 공동연구원으로 계신 교수님께서 다른 학교로 소속이 변경 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과제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응답

일반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시에는 계속 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 통합시스템 로그인 후 연구진행 - 연구계획변경 - 공동연구원변경에서 해당 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선택, 저장하시고 증빙서류 탑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유권해석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논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입법해석에 국한된다. ① 입법해석 :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부속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법문 중에 예시를 설정하는 것 등이 있다. ② 행정해석 : 행정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훈령·통첩 등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행정해석상에는 유효하여 그 행정해석을 내린 기관은 구속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서 해석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판결로써 행해지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므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제 3 장

연구비 관리

제 3 장 연구비 관리

상담사례

39 인건비 줄여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 한지

Q 질의

2010년도 선정된 과제로 협약용 계획서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지 않고, 보조연구원(학생)의 참여율이 낮아져서 임의로 외부인건비를 줄이고, 직접비(연구활동비)로 돌려서 집행하였습니다. 외부인건비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당초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반납 하셔야 됩니다.

40 외국대학 석사 학위자의 석사급 연구보조원 채용 가능 여부

Q 질의

외국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해서 2011년 2학기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석사급 연구보조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사 및 석사연구원은 연구 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중앙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행기관 소속으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해야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41 전임연구원수당을 연구보조원수당으로 전용 가능한지

Q 질의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의 전임연구원수당을 연구보조원수당으로 전용하여 쓸 수 있나요? 연구보조원수당을 전임연구원수당으로 전용하여 쓸 수 있나요?

A 응답

주관연구기관에서 예산변경의 타당성 검토 후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 내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임연구인력의 변경은 재단 승인사항이오니, 전임연구인력 삭제, 교체, 추가사항 발생시는 재단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 신분 변동된 연구책임자(시간강사)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현재 연구교수로서 과제 책임을 맡고 있으나, 이번달 말일로 계약이 해지 되어 시간강사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연구활동비와 연구수당을 조정하여 연구책임자(시간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응답

신분이 변경되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항목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으셨으므로, 연구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셔야 하며, 직접비 항목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43 직접비의 인건비 전용 가능 여부

Q 질의

사회과학지원사업(SSK) 1차 년도에서 연구원 변경이 있어서(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3명 → 전임연구인력 1명, 석사과정 3명) 인건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직접비에 책정된 금액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초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즉시」와 「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44 인건비 감액하여 연구활동비로 전용 가능 여부

Q 질의

일반연구(공동)에서 인건비를 감액해서 직접비 내의 연구활동비로 쓰고자합니다. 협약서에는 인건비는 직접비로 전용이 안 된다고 되어있던데 인건비 감액해서 연구활동비 증액이 가능한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인건비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액 발생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45 박사급 연구원이 신규과제 선정시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방법

Q 질의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기존 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인건비를 받다가 신규 과제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게 될 경우 기존 과제는 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연구수당으로 인건비를 전용해서 지급 가능한지요?

A 응답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6 시간강사 연구보조원 참여 가능 여부

Q 질의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에 보면 석사급 연구원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간강사로 일하는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가능한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규정 별표1에 따라 취업한 연구보조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시간강사의 경우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7 연구보조원 중복 지원 가능 여부

Q 질의

현재 토대기초연구지원팀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팀에서 연구보조원을 하면서 동시에 HK사업단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개인별 총액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7조 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학사과정 : 월 1,000,000원,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8 데스크탑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전환 구매 가능 여부

Q 질의

교수님께서 연구계획서 상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실 목적으로 예산을 잡아 두셨는데, 그것을 노트북으로 전환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요?

A 응답

기자재 구입 시 계획서에 있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사유를 적시하여 연구내용 변경 요청을 하시고, 해당 요청을 주관연구기관에서 판단하시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컴퓨터의 경우는 범용성 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해당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9 연구계획서 미계상 범용성 연구기자재 구입 가능 여부

Q 질의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연구수행 상 컴퓨터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범용성 연구기자재인 컴퓨터를 연구책임자의 사유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내부결재 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A 응답

범용성 연구기자재(컴퓨터)라 할지라도 연구 성향에 따라서 노트북을 소지하면서 현지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연구진행에 필요한 연구용 컴퓨터구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비록 연구계획서상 이러한 내역이 없더라도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처(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의 사유서 및 기자재구입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구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하게 적용(연구계획서 미계상 컴퓨터 불인정)할 계획입니다. 단, 추후 재단의 연구비 사용내역 점검시 이러한 사유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사유서가 첨부되었더라도 사용목적이 부적합할 경우는 연구비가 환수됩니다.

50 회의비 집행 후 후식비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인문사회사업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사업과 달리 식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식대가 아닌 회의 후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음료(커피 등) 집행이 가능한지요?

A 응답

회의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 식대는 집행이 가능 하지만, 식대와 별개로 후식을 집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회의 중에 사용하는 다과, 커피, 음료는 다과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51 해외학회 참석 취소시 출장비 정산

Q 질의

스웨덴의 학회 참석해야 하는데 여권을 분실하여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회관련 사용액을 취소하기 위해 숙박비(호텔)를 제외하고 학회등록비, 항공료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응답

취소가 가능한 비용은 취소를 하시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후 연구비 정밀정산 시 해당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나 증빙자료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2 논문게재료 지급 기한

Q 질의

2011년 4월 30일 종료되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연구) 연구과제의 연구비 중 논문게재료는 연구종료 후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한지요?

A 응답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인 논문게재료는 연구 종료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5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사용 가능 여부

Q 질의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학회 가입비, 연회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는 가입비, 연회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의 경우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학술대회의 참가, 발표 등의 경우 등록비는 인정하지만 연회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4 연구보조원 논문게재비 지원 가능 여부

Q 질의

연구보조원의 개인 연구가 등재지에 게재될 경우,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사표기를 한다면, 저희 사업팀의 연구성과로 포함되어 계산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 사업팀에서 논문게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응답

연구보조원은 학술지 게재의 의무가 없고, 연구보조원의 성과물은 해당사업팀의 연구성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팀에서 논문게재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55 동일 소속 교수 회의수당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현재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11명이 있는데, 이 중 7명은 일반연구원 및 HK연구교수이고,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4명은 학교 소속 교수님입니다. 인문한국지원사업 일반연구원 및 HK 연구교수가 아닌 위 4명의 학교 소속 교수님에 대해 회의수당을 회의 시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A 응답

회의수당은 동 과제 참여연구원(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모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동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학교 소속 여부 상관없음)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56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공무원은 회의수당을 줄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회의 참석시 이에 대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된 없을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7 외국대학 전임교수 자문비 지급

Q 질의

외국대학의 전임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신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이 경우 연구비에서 자문비가 차지하는 비용에 대한 상한이 있는가?

A 응답

외국대학 전임교수의 자문자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문비가 차지하는 비용의 상한선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학 등 주관연구기관내 자체 규정이나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고, 기준이 없다면 소속기관 연구비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58 야근식대 집행 가능 여부

Q 질의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활동비에서 참여연구인력의 야근식대지원(초과근무일지 비치)이 가능한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도 야근식대지원이 가능한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의 경우는 회의비는 인정하나 야근 식대를 따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9 통신비 계상 가능 여부 등

Q 질의

노트북에 네스팟이나 와이브로(혹은 와이파이)를 신청해서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은데, 네스팟이나 와이브로의 통신비도 연구비에 계상이 되는지요? 만일 계상이 된다면 직접비성 경비 중 어느 항목인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공공요금은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로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고려하여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60 연구실 환경유지비 사용 가능 여부

Q 질의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실환경유지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관연구기관 승인 하에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연구실 환경유지비(청소도구) 집행이 가능한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는 간접비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비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61 연구수당 지급 지준

Q 질의

연구수당은 해당연구과제 참여율, 연구활동 참여율, 논문성과, 지식재산권 출원 등 과제 기여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량화된 연구수당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가 동일 기준의 수당을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인문사회분야는 한도 내에서 월별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A 응답

질문에서 명시하신 연구기준은 과학기술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를 뜻하며 계상기준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1인 과제당 연 480만원 이내 (월 40만원 이내)입니다.

62 연구수당 중복 수혜 가능 여부

Q 질의

2012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동연구원이 융합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새로 신청하는 과제에서도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응답

연구수당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1인 과제당 연 480만원이내(월 4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63 2011년 계속과제의 연구수당 인상액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2011년 연구수당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계속과제도 인상된 연구수당으로 지급 가능한지요?

A 응답

2011년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당초 협약상의 연구계획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된 연구수당으로 지급 가능합니다(관련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1667(2011.06.13)). 이는 주관연구기관이 집행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자체 관리하며, 연구재단 변경 승인 필요 없습니다.

64 당초 연구계획 미계상 연구수당 예산변경 후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당초 연구계획에는 연구수당 금액이 잡혀 있지 않은데,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수당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응답

당초 직접비내 연구비 집행 계획에 없어도 항목간 예산 변경을 통해서 연구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단, 당초 연구계획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65 국외공동연구원 연구수당 한꺼번에 송금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연구수당이 2011년 42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월35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공동연구원의 경우 국외송금 수수료가 건당 3만원 정도로 매월 송금하기에 수수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꺼번에 송금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지급 가능 시점과 주관연구기관에서 송금영수증 외에 따로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A 응답

선불이 아닌 기한이 지난 후에는 한꺼번에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6, 7, 8월에 해당 하는 연구수당을 모아서 9월에 한꺼번에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10, 11, 12월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실 수 없으며, 송금영수증 외에도 송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됩니다.

66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의 기관지원금 집행 기준

Q 질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의 기관지원금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관에서 교수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A 응답

기관지원금은 연구자의 편의제공(연구실 제공, 연구실 비품, 연구실 소모품, 학교시설 이용비 등)을 위하여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연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7 기관지원금 잔액 이월 가능 여부

Q 질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의 기관지원금 잔액은 총 사업 기간 내에(해당 차년도 이후) 연구 간접비로 흡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는 없는데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A 응답

기관지원금은 간접비성격은 아니므로 이월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관연구기관에서 흡수 가능합니다.

68 학술연구교수사업의 간접비 지원 여부

Q 질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은 간접비가 전혀 없는 사업인가요?

A 응답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은 2011년 기준으로 4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33백만원), 연구활동비(6백만원), 기관지원금(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간접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69 간접비 책정 방법

Q 질의

간접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지급되나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간접비는 대학 등 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비율에 따라 연구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연구비 편성과도 무관합니다.

70 연구비에 간접비 포함 여부 및 간접비 용도

Q 질의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간접비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건가요?

A 응답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는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간접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에 의거, 기간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간접비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연구비가 아니며 기관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71 계속과제 간접비 적용 기준

Q 질의

신규 과제의 간접비는 협약시점 적용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과제의 간접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A 응답

계속과제의 간접비는 선정년도 혹인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1 - 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하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합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대학은 원가계산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대상기간 전에 설립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심사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5 퍼센트('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D등급)를 일괄 적용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연구개발서비스업은 제외)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및 예외 지급 기준

[별표1]

2011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1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3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4
	(수리과학연구소)	16.14
	핵융합연구소	17.45
	한국천문연구원	44.11
	한국한의학연구원	25.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23
	한국해양연구원	18.09
	(극지연구소)	26.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79
	한국원자력연구원	28.77
산업기술연구회 (1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6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7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2.04
	한국식품연구원	13.84
	(세계김치연구소)	26.09
	한국기계연구원	11.29
	(재료연구소)	13.12
	한국전기연구원	18.99
	한국화학연구원	19.64
	(안전성평가연구소)	13.5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7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7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83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25
	광주과학기술원	22.9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43
	한국연구재단	17.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9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52
	한국세라믹기술원	22.28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간접비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간접비 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함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7개)	(사)고등기술연구원	18.37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80
	자동차부품연구원	26.99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84
	전자부품연구원	21.18
	한국신발피혁연구소	24.26
	나노종합팹센터	24.39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전력연구원(한국전력공사), 한국광기술원, 기초전력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삼성서울병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서울아산병원,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하동녹차연구소,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한국실크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20개 기관은 간접비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간접비 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함.

4. 대학

가.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	가톨릭대학교	35.12	30		30
2	강릉원주대학교	40.52	31	−3	28
3	강원대학교	39.28	30	−3	27
4	건국대학교	27.20	27.20		27.20
5	경기대학교	34.58	29	−3	26
6	경남대학교	44.38	31		31
7	경북대학교	38.17	30		30
8	경상대학교	31.24	29		29
9	경성대학교	27.47	27.47		27.47
10	경원대학교	31.55	29		29
11	경희대학교	37.73	30		30
12	계명대학교	32.45	29		29
13	고려대학교	26.85	26.85	+3	29.85
14	공주대학교	33.86	29		29
15	광운대학교	25.00	25.00		25.00
16	국민대학교	27.07	27.07		27.07
17	군산대학교	42.21	31		31
18	단국대학교	38.25	30		30
19	대구가톨릭대학교	33.71	29		29
20	대구대학교	42.40	31		31
21	대구한의대학교	35.35	30		30
22	대전대학교	32.06	29		29
23	동국대학교	42.55	31		31
24	동아대학교	38.43	30		30
25	명지대학교	23.83	23.83		23.83
26	배재대학교	29.17	28		28
27	부경대학교	34.49	29	−3	26
28	부산대학교	35.65	30		30
29	부산외국어대학교	44.57	31		31
30	상명대학교	34.13	29		29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31	서강대학교	30.86	29		29
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8.78	30		30
33	서울대학교	30.90	29	−3	26
34	성균관대학교	29.00	28	+3	31
35	숙명여자대학교	41.39	31		31
36	숭실대학교	38.34	30		30
37	아주대학교	31.81	29		29
38	안동대학교	37.84	30	−3	27
39	연세대학교	31.43	29	+3	32
40	영남대학교	38.58	30		30
4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17.02	31		31
42	울산대학교	26.79	26.79		26.79
43	원광대학교	30.00	29		29
44	이화여자대학교	30.48	29		29
45	인제대학교	35.97	30		30
46	인천대학교	35.14	30		30
47	인하대학교	28.54	28		28
48	전남대학교	40.57	31	+3	34
49	전북대학교	34.43	29	+3	32
50	전주대학교	44.41	31		31
51	제주대학교	33.15	29		29
52	조선대학교	35.24	30		30
53	중앙대학교	30.74	29		29
54	창원대학교	33.45	29	−3	26
55	충남대학교	37.64	30	+3	33
56	충북대학교	34.69	29	+3	32
57	충주대학교	34.78	29		29
58	포항공과대학교	59.01	31		31
59	한국외국어대학교	38.40	30	−3	27
60	한국항공대학교	31.38	29		29
61	한국해양대학교	36.30	30		30
62	한남대학교	25.03	25.03	−3	22.03
63	한림대학교	28.33	28		28
64	한밭대학교	36.10	30		30
65	한양대학교	32.50	29		29

나.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대 학 명	실태조사 등급	최종 비율	연번	대 학 명	실태조사 등급	최종 비율
1	강남대학교	A	20	51	청운대학교	B	15
2	관동대학교	A	20	52	청주교육대학교	B	15
3	금오공과대학교	A	20	53	청주대학교	B	15
4	덕성여자대학교	A	20	54	춘천교육대학교	B	15
5	동명대학교	A	20	55	한경대학교	B	15
6	동서대학교	A	20	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7	동신대학교	A	20	5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B	15
8	동의과학대학	A	20	58	한서대학교	B	15
9	동의대학교	A	20	59	한일장신대학교	B	15
10	목원대학교	A	20	60	호남대학교	B	15
11	백석대학교	A	20	61	호서대학교	B	15
12	삼육대학교	A	20	62	경기공업대학	C	10
13	상지대학교	A	20	63	경희사이버대학교	C	10
14	서울시립대학교	A	20	64	고려사이버대학교	C	10
15	서울여자대학교	A	20	65	고신대학교	C	10
16	서정대학	A	20	66	공주교육대학교	C	10
17	선문대학교	A	20	67	광주여자대학교	C	10
18	성신여자대학교	A	20	68	남부대학교	C	10
19	세명대학교	A	20	69	남서울대학교	C	10
20	세종대학교	A	20	70	대덕대학	C	10
21	순천향대학교	A	20	71	동덕여자대학교	C	10
22	영산대학교	A	20	72	목포대학교	C	10
23	용인대학교	A	20	73	부산교육대학교	C	10
2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 진주산업대학교)	A	20	74	서남대학교	C	10
				75	서일대학	C	10
25	한국교원대학교	A	20	76	신라대학교	C	10
26	홍익대학교	A	20	77	안양대학교	C	10
27	가천의과학대학교	B	15	78	영동대학교	C	10
28	건양대학교	B	15	79	위덕대학교	C	10
29	경인교육대학교	B	15	80	장로회신학대학교	C	10
30	경일대학교	B	15	81	적십자간호대학	C	10

연번	대 학 명	실태조사 등급	최종 비율	연번	대 학 명	실태조사 등급	최종 비율
31	광주교육대학교	B	15	82	전남과학대학	C	10
32	광주대학교	B	15	83	전주교육대학교	C	10
33	극동대학교	B	15	84	제주한라대학	C	10
34	금강대학교	B	15	85	진주교육대학교	C	10
35	대구교육대학교	B	15	86	청강문화산업대학	C	10
36	대구보건대학	B	15	87	한국국제대학교	C	10
37	대진대학교	B	15	88	한동대학교	C	10
38	동양대학교	B	15	89	한라대학교	C	10
39	목포해양대학교	B	15	90	한신대학교	C	10
40	백석문화대학	B	15	91	한양사이버대학교	C	10
41	서경대학교	B	15	92	한양여자대학	C	10
42	서울교육대학교	B	15	93	경북과학대학	D	5
43	성결대학교	B	15	9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	5
44	성공회대학교	B	15	95	부산정보대학	D	5
45	수원여자대학	B	15	96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46	순천대학교	B	15	97	서라벌대학교	D	5
47	영남이공대학	B	15	9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D	5
48	우석대학교	B	15	99	우송대학교	D	5
49	을지대학교	B	15	100	한국체육대학교	D	5
50	차의과학대학교	B	15	101	한중대학교	D	5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 정률계상사업 : 간접비 고시율 “정률”로 적용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고시율 이내 또는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연구개발사업	○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

72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의 잔액 이월 가능 여부

Q 질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 3년 과제로 현재 1차년도 잔액(4대 보험료 잔액, 퇴직금, 기관지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곧 2차년도 과제가 종료되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에 똑같은 과목으로 1차년도 잔액+2차년도 잔액이 남게 되는데, 잔액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비목별 이월금액, 이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으로 이월된 연구비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연구 종료 후 최종 잔액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73 2011년 선정 계속과제의 정액과제 연구비 집행

Q 질의

2011년 선정 정액과제의 경우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연구활동비를 연구수당으로 사용가능한지요? 혹 가능하다면 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A 응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의 비목 중 직접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700만원 중 최대 연 420만원까지(매월 35만원 이내) 연구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280만원(연구수당 제외한 차액)은 나머지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하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어 주관연구기관이 발급하는 법인카드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74 정액과제 연구비 정산 여부

Q 질의

정액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산 의무가 없는 과제인지요?

A 응답

네 맞습니다. 2012년 협약 과제부터는 정산 의무가 없으며,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11년 협약과제까지는 소규모 일정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비 정산절차를 간소화한 과제지 정산 의무가 없는 과제는 아닙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정산시 카드사용명세서로 대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본다(간주한다)」와 「추정한다」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擬制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된다.

제 4 장

사후관리

제 4 장 사후관리

상담사례

75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종류 및 제출기한 문의

Q 질의

연구 진행 중 이나 종료되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응답

단년연구(1년연구)라면 결과보고서와 최종연구결과물을, 다년연구(2년 혹은 3년 연구)라면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한			
보고서 유형 / 연구기간	연차보고서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전	결과보고서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최종연구결과물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1년 연구 (2012.5.1-2013.4.30)	제출의무 없음	13년 10월 31일까지	15년 4월 30일까지
2년 연구 (2012.5.1-2014.4.30)	1년차 보고서 13년 2월 28일까지	14년 10월 31일까지	1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구 (2012.5.1-2015.4.30)	1년차 보고서 13년 2월 28일까지 2년차 보고서 14년 2월 28일까지	15년 10월 31일까지	17년 4월 30일까지

76 연구시작 후 6개월 이내 게재된 논문의 성과 인정 여부

Q 질의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물 발표일자가 12년도 09월 30일자 학술지에 실리게 된다면, 해당 연구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응답

연구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연구결과물은 연구개시 후 6개월 이후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12년도 연구개시일이 5월 1일이기에 09월에 게재 완료된 논문은 6개월 이내에 게재된 논문이므로 사업의 성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77 연구결과보고서를 논문으로 대체 가능 한지

Q 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논문게재가 완료되어 연구결과보고서를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A 응답

논문을 연구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논문를 게재했더라도 연구결과보고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므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78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의 의미

Q 질의

결과보고서를 등록하려 보니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항목이 있습니다. 중간산출물은 만들어진바 없으므로 관계가 없는데, 원자료는 협약서에 보니 수집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료 등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응답

말씀하신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은 연구과제를 진행하시면서 수집하시거나, 활용하셨던 자료들로 후속 연구자가 활용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료(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수집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올려주시면 되시지만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시기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추후 기초학문자료센터사업의 일환으로 해당과제의 중간산출물 및 원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그 시점에 후속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를 위해 자료를 기탁하여주시면 되십니다.

79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제출기한

Q 질의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항목의 제출기한도 최종보고서 제출기한과 같은 것인가요?

A 응답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의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나 과제 종료 후에도 성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80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Q 질의

2009년 선정(2년 과제) 국내박사후 과정의 연구기한이 2011. 6. 30일까지 입니다. 최소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규정에는 연구 종료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1년차 연구기간과 2년차 연구기간을 각각 따로따로 산정해서 1년차에 따른 최종연구결과물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2년차에 따른 최종연구결과물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인지요?

A 응답

최종결과물(논문) 제출은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06월 30일까지 논문 2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기일」·「기한」·「기간」	「期日」이란 어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변론기일, 공판기일등)를 말하고 「期限」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期間」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期間」과 「期限」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期間」으로,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期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期間」은 연장으로, 「期限」은 연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81 교체된 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Q 질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수행 중 공동연구원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된 연구원은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전 연구원이 연구결과물 제출하다면 교체된 연구원도 연구결과물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까?

A 응답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도록 신청요강에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원이 교체된 경우 최종으로 교체된 연구원이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체전 연구원이 연구결과물 제출하였다면 추가 제출은 가능하고,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82 게재 예정 논문도 성과로 인정 가능한지

Q 질의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논문이 게재 예정이 확정되었지만 실제 출판은 연구 종료 후 2년이 지나서 되는 경우 성과로 인정하여 주시나요?

A 응답

최종연구결과물은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하고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상기 질문처럼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논문이 게재 예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출판이 연구종료 후 2년 이후에 출판되면 최종연구결과물 미등록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출판 후 제재해지 요청하시면 제재해지 됩니다.

83 연구결과물의 e-book 인정 여부

Q 질의

2008년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단독연구)에 선정되어 연구를 마치고 연구결과물 발표는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한 것을 재단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결과물을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려고 하는데, 전자책 출판물도 최종연구결과물로 인정되는지요?

A 응답

2008년도 해당 사업의 신청요강에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급 & SSCI급)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book도 저서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단, ISBN은 부여받아야 함). 다만, 전문학술저서로의 인정은 해당 출판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종결과물로 제출하시면 검토 후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4 연구결과물 사사표기

Q 질의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번에 연구결과물이 학술지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었지요. 제 계약서에 따르면 사사표기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000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0000-해당사업코드-과제번호)"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변경사항은 없는지요?

A 응답

통합 전에 지원 받은 경우도 한국연구재단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2011년 선정된 신진연구의 사사표기는 “이 논문(저서)는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과제번호)‘’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85 결과물 미제출로 제재조치 받은 경우 제재 해지 가능 여부

Q 질의

2007년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단독연구)에 선정되어 연구를 마쳤으나, 연구종료 후 기한 내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못해 연구결과보고서를 평가를 받아 C등급 받아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 연구비 신청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재단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구비 신청제한을 해지하여 주시나요?

A 응답

2008년 6월 30일 이전 협약한 과제라도 학술연구과제 관리규칙이 개정(2011.7.28)되어 신청제한의 제재 받은 경우라도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 후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 연구비 신청제한의 제재를 해지 합니다.

연구결과발표물 미제출 연구자 제재조치 및 해지 기준

○ 연구결과발표물 미제출 연구자 제재조치 및 해지

협약체결 기준일	제재조치	제재해지
2008. 6. 30이전 (유형 1)	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C급 3년, D급 5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 연구비 신청제한(80점 이상 제재 면함)	제재조치 후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 제재 해지(학술연구과제 관리규칙 개정 (2011.7.28))
2008. 7. 1 ~ 12. 31 (유형 2)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제재조치 후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 제재 해지

협약체결 기준일	제재조치	제재해지
2009. 9. 1 ~ 2011. 2. 10 (유형 3)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 제한	
2011. 2. 11 ~ (유형 4)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 제한	제재조치 후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 평가결과에 따라 2년~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 제한(통과(80점 이상) 2년, C급(60점~79점) 3년, D급(60점 미만) 5년

○ 제재시점

구분	제재시점
유형 1	· 제재 통보일 부터 적용
유형 2, 3	·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마감일 익일 이후 적용
유형 4	·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마감일 익일 이후 적용 · 제재조치 후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결과물 제출 시점부터 제재 기간 산정(다만, 총 제재기간은 5년 초과 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특이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름

86 최종결과물(논문) 제출기한 연장 가능 여부

Q 질의

최종결과물(논문) 제출이 개인사정으로 늦어져 마감일까지 등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친다면,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한지요? 혹, 제출기한 연장이 안 된다면 미제출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응답

연구자들의 개인사정으로 제출기한을 연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됩니다.

87 다년과제의 논문제목 부제 사용 여부

Q 질의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단독연구) 2년 사업중 1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발생된 성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총 2년으로 1차년도에는 2차 년도를 위한 사전조사로 계획되어 있어, 1차년도 연구된 내용을 논문 제목으로 해서 게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원과제명에 부제를 달아도 되는지, 반드시 원과제명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A 응답

1차년도 연구를 학술지에 게재 하셔도 됩니다. 다년과제는 논문을 2편 이상을 게재토록 되어 있어 당초에 신청한 논문제목과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붙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88 단독연구의 경우 공동논문 게재 가능 여부

Q 질의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단독연구 책임자 1인 이름으로만 내야 하는 것인지요?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조원, 분석에 참여했던 사람과 공동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A 응답

단독연구의 경우 과제에 참여한 연구조보원과 공동발표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 동료교수나, 제자의 논문편수를 늘려 주기 위한 것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9 논문 제목 변경 가능 여부

Q 질의

논문을 학회지에 등재할 때 연구계획서 상의 논문 제목과 동일해야 하는지요?

A 응답

논문게재시 연구계획서상의 제목과 동일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편집원의 권유에 따라 변경 되는 경우, 연구결과가 한편 이상으로 게재 되는 경우, 당초 계획에 의하여 연구된 결과이기는 하나 제목을 약간 달리하여 연구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제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이 달라진 경우 전산시스템에 최종결과물을 등록시 제목 변경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90 사시표기 병기 가능 여부

Q 질의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해당 논문에 사사표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논문에 사사표기를 중복해서(두 개) 해도 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내연구비에 대한 사사표기와 신진교수연구지원에 대한 사사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A 응답

질의하신 사항 사사 병기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 즉 재단사업에서의 지원과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91 사시표기 누락시 행정절차

Q 질의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여 이미 논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논문신청시 사사(acknowledgment) 표기 방법에 실수가 있어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가 아닌 학교측의 산학연에서 관리하는 번호를 표기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논문 제목은 신청한 과제와 동일한 경우인데요.

A 응답

사사표기 누락으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본인이 서명한 사유서 1부와 해당 학회지에 정정 요청한 원본을 제출하실 경우 이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해제」·「해지」	해제는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 놓는 것). 그린벨트 해제, 공습경보 해제, 소집 해제, 잠금 해제 등 해지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상황 또는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하는 것(지금까지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 보험 해지, 카드 해지, 인터넷 해지 등

92 사업별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및 편수

Q 질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및 편수가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응답

각 사업별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및 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제출기준</th></tr>
<tr><td rowspan="3">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학술연구 교수]</td><td>2009</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급·SSCI급·SCI &SCIE급) 학술지)에 1년 연구는 1편, 다년 연구는 해당년수 ×1편 이상 게재하거나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2010</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 A&HCI · SSCI, SCOPUS) 학술지)에 1년 연구는 1편, 다년 연구는 해당년수 × 1편 이상 게재하거나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2011</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 · 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 SSCI, SCOPUS) 학술지)에 1년 연구는 1편, 다년 연구는 해당년수 × 1편 이상 게재하거나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td><td>2012</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1년</th><th>2년</th><th>3년</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 colspan="3">해당년수 × 1편 이상</td><td>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able></td></tr>
<tr><td rowspan="2">보호학문분야 강의지원사업</td><td>2009</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2010</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 SSCI, SCI(E), SCOPUS)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td><td>2011</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제출의무 : 1편 이상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제출기준</th></tr>
<tr><td></td><td>2012</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제출의무 편수 : 1편 이상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td></tr>
<tr><td rowspan="3">신진교수연구
지원사업</td><td>2009</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 SCIE급, A&HCI급·SSCI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2편 이상</td></tr>
</table></td></tr>
<tr><td>2010</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2편 이상</td></tr>
</table></td></tr>
<tr><td>2011</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단년 및 다년과제</th><th>비고</th></tr>
<tr><td>제출의무</td><td>연간 1편 이상</td><td>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able></td></tr>
<tr><td>신진연구자
지원사업</td><td>2012</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1년</th><th>2년</th><th>3년</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 colspan="3">해당년수 × 1편 이상</td><td>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able></td></tr>
<tr><td>일반기초연구
지원사업
[단독연구]</td><td>2009</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 SCIE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단독연구 및 공동연구)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참여자(보조원 제외)가 연구결과발표물 중 최소한 1회 이상 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2편으로 인정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제출기준</th></tr>
<tr><td rowspan="4"></td><td></td><td>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 rowspan="2">2편 이상</td></tr>
<tr><td>공동연구</td><td>2편 이상</td></tr>
</table>
</td></tr>
<tr><td>2010</td><td>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등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등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 참여자가 최종결과물을 제출 함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2편 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공동연구</td><td colspan="2">2편 이상</td></tr>
</table>
</td></tr>
<tr><td>2011</td><td>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1년</th><th>2년</th><th>3년</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 colspan="2">해당년수 × 1편 이상</td><td rowspan="2"></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공동연구</td><td colspan="2">2편 이상</td><td>3편 이상</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중견연구자
지원사업</td><td>2012</td><td>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1년</th><th>2년</th><th>3년</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 colspan="3">해당년수 × 1편 이상</td><td>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able>
</td></tr>
<tr><td rowspan="3">일반기초연구
지원사업
[공동연구]</td><td>2009</td><td>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단독연구 및 공동연구)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참여자(보조원 제외)가 연구결과발표물 중 최소한 1회 이상 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2편으로 인정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 rowspan="2">2편 이상</td></tr>
<tr><td>공동연구</td><td>2편 이상</td></tr>
</table>
</td></tr>
<tr><td>2010</td><td>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등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등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제출기준</th></tr>
<tr><td rowspan="2"></td><td></td><td>※ 공동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 참여자가 최종결과물을 제출 함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2편 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공동연구</td><td colspan="2">2편 이상</td></tr>
</table></td></tr>
<tr><td>2011</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1년</th><th>2년</th><th>3년</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 colspan="3">해당년수 × 1편 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공동연구</td><td colspan="2">2편 이상</td><td>3편 이상</td></tr>
</table></td></tr>
<tr><td rowspan="2">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td><td>2012</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1년</th><th>2년</th><th>3년</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 colspan="3">해당년수 × 2편 이상</td><td>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able></td></tr>
<tr><td rowspan="3">우수학자지원
사업</td><td>2009</td><td>※ 본 사업은 연구결과물을 결과보고서로 인정함
※ 제출 의무 : 출판물(전문 학술저서, 단독) 1권
※ 해외 저명 출판사 출판 권장
※ 국내 출판의 경우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인문학분야 : 영문 저서출판 권장
· 사회과학분야 : 영문 저서출판 필수
(단, 사회과학의 경우 영문 이외의 언어로 출판해야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td></tr>
<tr><td>2010</td><td>※ 본 사업은 연구결과물을 결과보고서로 인정함
※ 제출 의무 : 출판물(전문 학술저서, 단독) 1권
※ 해외 저명 출판사 출판 권장
※ 국내 출판의 경우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
· 인문학분야 : 영문 저서출판 권장
· 사회과학분야 : 영문 저서출판 필수
(단, 사회과학의 경우 영문 이외의 언어로 출판해야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td></tr>
<tr><td>2011</td><td>※ 본 사업은 연구결과물을 결과보고서로 인정함
– 연구결과물 : 출판물(전문 학술저서, 단독)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하되, 한국연구재단과 협의하여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로 제한함
– 출판물 제출부수 : 20부(국 · 공립도서관 및 관계기관 배포)
※ 해외 저명 출판사 출판 권장(국내 출판의 경우,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
– 영문 저서출판(인문학 분야 : 권장 / 사회과학분야 : 필수)
(단, 사회과학의 경우 영문 이외의 언어로 출판해야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제출기준</th></tr>
<tr><td></td><td>2012</td><td>※ 본 사업은 연구결과물을 결과보고서로 인정함
※ 제출한 출판물은 국 · 공립도서관 및 관계기관 배포
○ 제출자료
– 저술출판 결과물(PDF파일) 탑재 및 출판물 20권 제출
[연구결과물 출판]
– 해외 저명 출판사 출판 권장(국내 출판의 경우,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
· 영문 저서출판(인문학 분야 : 권장 / 사회과학분야 : 필수), (단, 사회과학의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해야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출판물 : 전문 학술저서, 단독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하되,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를 권장함</td></tr>
<tr><td rowspan="2">인문저술지원
사업</td><td>2009</td><td>○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연구비 중앙 관리 부서를 통한 제출
○ 제출자료 : 출판 완료 도서 2부</td></tr>
<tr><td>2010</td><td>○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연구비 중앙 관리 부서를 통한 접수
○ 접수자료 : 출판 완료 도서 2부</td></tr>
<tr><td rowspan="2">저술출판지원
사업</td><td>2011</td><td>○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연구비 중앙 관리 부서를 통한 접수
○ 접수자료 : 출판 완료 도서 2부</td></tr>
<tr><td>2012</td><td>○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제출자료 : 출판 완료 도서 2부</td></tr>
<tr><td rowspan="3">토대기초연구
지원사업</td><td>2009</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 SCIE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단독연구 및 공동연구)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참여자(보조원 제외)가 연구결과발표물 중 최소한 1회 이상 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2편으로 인정함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 rowspan="2">2편 이상</td></tr>
<tr><td>공동연구</td><td>2편 이상</td></tr>
</table></td></tr>
<tr><td>2010</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SCOPUS급 학술지 2010년 추가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 참여자가 최종결과물을 제출함
※ 일반과제로 신청한 경우: (게재논문 또는 저서)
※ 번역과제로 신청한 경우: (자료집 또는 저서, 번역서)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2편 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공동연구</td><td colspan="2">2편 이상</td></tr>
</table></td></tr>
<tr><td>2011</td><td>–최종연구결과물(1차)
•사전학 및 자료학 : DB자료(DB 직접 제출 또는 공개서비스 실시)
•총서학 : 저서 파일(공개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및 자료</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 colspan="4">제출기준</th></tr>
<tr><td rowspan="5"></td><td rowspan="4"></td><td>지원유형</td><td>제출 시기</td><td>제출 자료</td><td>비고</td></tr>
<tr><td>Ⅰ유형: 사전학, 자료학</td><td>연구결과보고시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td><td>DB 직접 제출 또는 DB 공개서비스 실시</td><td>2차 결과물 제출 없음</td></tr>
<tr><td>Ⅱ유형 : 총서학</td><td>■1차 결과물 :연구결과보고시(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2차 결과물 : 연구종료 후 2년 이내</td><td>1차결과물 : 저서 파일 (공개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2차결과물 : 저서 출판물</td><td></td></tr>
<tr><td colspan="4">–최종연구결과물(2차)
○ 제출시기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대상 : 총서학
※ 사전학 및 자료학은 최종연구결과물(2차) 제출의무가 없음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우편제출(제출공문 포함)</td></tr>
<tr><td>2012</td><td colspan="4">–최종연구결과물(1차)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전학 및 자료학 : DB자료
•총서학 : 저서 파일(공개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및 자료</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지원유형</td><td>제출 시기</td><td>제출 자료</td><td>비고</td></tr>
<tr><td>Ⅰ유형: 사전학, 자료학</td><td>연구결과보고시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td><td>DB자료</td><td>2차 결과물 제출 없음</td></tr>
<tr><td>Ⅱ유형 : 총서학</td><td>■1차 결과물 :연구결과보고시(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2차 결과물 : 연구종료 후 2년 이내</td><td>1차결과물 : 저서파일 (공개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2차결과물 : 저서 출판물</td><td></td></tr>
<tr><td colspan="4">–최종연구결과물(2차)
○ 제출시기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대상 : 총서학
※ 사전학 및 자료학은 최종연구결과물(2차) 제출의무가 없음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우편제출(제출공문 포함)</td></tr>
<tr><td rowspan="3">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td><td rowspan="3">2009</td><td colspan="3">제출자료</td><td>기준</td></tr>
<tr><td colspan="3">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제수준(A&HCI, SSCI, SCIE급 등)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출판된 전문학술저서</td><td>연구소당 1년에 2편 이상</td></tr>
<tr><td colspan="4">※ 해당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 colspan="4">제출기준</th></tr>
<tr><td rowspan="9"></td><td rowspan="3">2010</td><td colspan="2">제출자료</td><td colspan="2">기준</td></tr>
<tr><td colspan="2">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제수준(A&HCI, SSCI, SCIE, 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전문학술저서</td><td colspan="2">연구소당 1년에 2편 이상</td></tr>
<tr><td colspan="4">※ 해당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3">2011</td><td colspan="2">제출자료</td><td colspan="2">기준</td></tr>
<tr><td colspan="2">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제수준(A&HCI, SSCI, SCIE, 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전문학술저서</td><td colspan="2">연구소당
연간 2편 이상</td></tr>
<tr><td colspan="4">※ 해당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3">2012</td><td colspan="2">제출자료</td><td colspan="2">기준</td></tr>
<tr><td colspan="2">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td><td colspan="2">연구소당
연간 2편 이상</td></tr>
<tr><td colspan="4">※ 해당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8">학제간융합
연구지원사업</td><td rowspan="3">2009</td><td colspan="4">–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 SSCI, SCI(E),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사업명</td><td>구분</td><td>논문수</td><td>비고</td></tr>
<tr><td rowspan="2">새싹형</td><td>연구책임자</td><td>3편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일 경우 2편, 공동 저작일 경우 1편으로 인정</td></tr>
<tr><td>참여연구원</td><td>1편이상</td></tr>
<tr><td rowspan="5">2010</td><td colspan="4">–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 새싹형 사업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온라인 제출
※ 씨앗형 사업은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없음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 SSCI, SCI(E),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사업명</td><td>구분</td><td>논문수</td><td>비고</td></tr>
<tr><td rowspan="2">새싹형</td><td>연구책임자</td><td>3편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일 경우 2편, 공동 저작일 경우 1편으로 인정</td></tr>
<tr><td>참여연구원</td><td>1편이상</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제출기준</th></tr>
<tr><td rowspan="2"></td><td>2011</td><td>※ 씨앗형 사업은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없음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해당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원이 1편 이상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중단시 연구책임자는 연 1편 이상, 공동연구원은 연구기간 2년 이상부터 1편 이상
<table>
<tr><th>구분</th><th>구분</th><th>논문수</th><th>비고</th></tr>
<tr><td rowspan="2">새싹형</td><td>연구책임자</td><td>3편 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참여연구원</td><td>1편 이상</td></tr>
</table></td></tr>
<tr><td>2012</td><td>○ 제출대상 : 새싹형
※ 씨앗형, 산학협력형, 융합연구총괄센터는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의무가 없음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논문수</th><th>비고</th></tr>
<tr><td>연구책임자</td><td>해당년수 × 1편 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공동연구원</td><td>1편 이상</td></tr>
</table></td></tr>
<tr><td rowspan="3">명저번역지원
사업</td><td>2009</td><td>– 제출시기 : 최종 번역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1년 이내에 출판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분야별(동양/서양서)로 각 2개씩 지정하는 출판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출판
○ 제출자료 : 최종 원고파일</td></tr>
<tr><td>2010</td><td>※ 한국연구재단에서 분야별(동양/서양서)로 각 2개씩 지정하는 출판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출판
○ 제출자료 : 최종 원고파일 및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 작성한 원자료와 중간 산출물</td></tr>
<tr><td>2011</td><td>※ 한국연구재단에서 분야별(동양/서양서)로 각 2개씩 지정하는 출판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출판
○ 제출자료 : 최종 원고파일 및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 작성한 원자료와 중간 산출물(온라인 탑재)</td></tr>
<tr><td rowspan="2">사회과학지정
주제
지원사업</td><td>2009</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 SSCI, A&HCI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 rowspan="2">2편 이상</td></tr>
<tr><td>공동연구</td><td>2편 이상</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제출기준</th></tr>
<tr><td rowspan="2"></td><td>2010</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등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등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 참여자가 최종결과물을 제출 함</td></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단년과제</th><th>다년과제</th><th>비고</th></tr>
<tr><td>단독연구</td><td>1편 이상</td><td>2편 이상</td><td rowspan="2">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td></tr>
<tr><td>공동연구</td><td colspan="2">2편 이상</td></tr>
</table>
</td></tr>
<tr><td rowspan="3">한국사회기반
연구지원사업
(SSK)</td><td rowspan="2">2010</td><td>※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전문학술지 투고 시점)에 발표된 논문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최종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동 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은 최종연구결과물에 1번 이상은 저자로 표기되어야 함</td></tr>
<tr><td>
<table>
<tr><th>제출자료</th><th>기준</th></tr>
<tr><td>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수준(A&HCI, SSCI, SCOPUS급 등) 학술지 게재 논문, 소형 1년차(학술대회 발표물, Working Paper등)</td><td>소형연구팀당
1년에 2편 이상</td></tr>
</table>
</td></tr>
<tr><td>2011</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제출자료 및 기준 : 소형 연구팀당 2편 이상(1년기준)
– 연구성과물 요구수준은 단순 양적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을 고려(공동저자수, SSCI등재여부, 전문우수학술저서여부 등)한 비율방식으로 환산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동 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은 최종연구결과물에 1번 이상은 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td></tr>
<tr><td></td><td>2012</td><td>–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 요구수준은 단순 양적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을 고려(공동저자수, SSCI등재여부, 전문우수학술저서여부 등)한 비율방식으로 환산)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table>
<tr><th>구분</th><th>2년</th><th>3년</th><th>비고</th></tr>
<tr><td>공동연구
(연구팀당)</td><td colspan="2">해당년수 × 200%이상</td><td>※ 환산기준 예시 : 1인저자 1편 = 100%(재단등록학술지 기준), 1인당 SSCI 논문 1편 = 200% 등</td></tr>
</table>
</td></tr>
<tr><td>대학교수해외
방문
연구지원사업</td><td>2009</td><td>–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 SCIE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선정
연도</th><th colspan="2">제출기준</th></tr>
<tr><td rowspan="6"></td><td rowspan="2"></td><td>인문사회분야 계열</td><td>이공계열</td></tr>
<tr><td>–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SCOPUS급) 학술지
–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최고수준 학술지
– 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단,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로 게재</td><td>– 국제적 수준(SCI&SCIE, SCOPUS급) 학술지</td></tr>
<tr><td rowspan="3">2010</td><td colspan="2">– 최종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은 국외 전문학술지 게재를 원칙으로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공동연구자가 공저자로 표기되어야 함.</td></tr>
<tr><td>인문사회분야</td><td>이공분야</td></tr>
<tr><td>– 국제적 수준 학술지 :
A&HCI, SSCI, SCOPUS
– 영어권 국가 또는 파견국가에서 발행하는 우수 저널</td><td>– 국제적 수준 학술지 :
SCI, SCIE, SCOPUS</td></tr>
<tr><td rowspan="3">2011</td><td colspan="2">– 최종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은 국외 전문학술지 게재를 원칙으로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공동연구자가 공저자로 표기되어야 함.</td></tr>
<tr><td>인문사회분야</td><td>이공분야</td></tr>
<tr><td>– 국제적 수준 학술지 :
A&HCI, SSCI, SCOPUS
– 영어권 국가 또는 파견국가에서 발행하는 우수 저널</td><td>– 국제적 수준 학술지 :
SCI, SCIE, SCOPUS</td></tr>
<tr><td rowspan="3">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사업</td><td rowspan="3">2012</td><td colspan="2">※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공동연구자가 공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제출자료 : 아래 국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 이상</td></tr>
<tr><td>인문사회분야</td><td>이공분야</td></tr>
<tr><td>– 국제적 수준 학술지 :
SCI&SCIE, A&HCI · SSCI, SCOPUS
– 영어권 국가 또는 파견국가에서 발행하는 우수 저널</td><td>– 국제적 수준 학술지 :
SCI &SCIE, A&HCI · SSCI, SCOPUS</td></tr>
<tr><td>인문한국지원 사업(HK)</td><td>2009
~
2012</td><td colspan="2">단계 및 최종 평가 실시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없음)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2">신흥지역연구 지원사업</td><td rowspan="2">2012</td><td>제출기준</td><td>기준</td></tr>
<tr><td>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 &SCIE급, A&HCI급 · 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td><td>연구소당
연간 1편 이상</td></tr>
</table>

93 사업별 사시표기 방법

Q 질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사사표기 방법을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응답

각 사업별 사사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선정 연도	사사표기 방법	
학문후속 세대 지원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학술연구 교수]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해당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사업코드 : 박사후국내연수(351), 박사후국외연수(352), 학술연구교수(353)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사업코드 : 박사후국내연수(354), 박사후국외연수(356), 학술연구교수(358)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해당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사업코드 : 박사후국내연수(354), 박사후국외연수(356), 학술연구교수(358)	
학문후속 세대지원 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학문후속 세대 지원사업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5C-과제번호)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사업명	선정 연도	사사표기 방법	
신진교수 연구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32-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32-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32-과제번호)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일반기초 연구 지원사업 [단독연구]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27-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27-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27-과제번호)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일반기초 연구 지원사업 [공동연구]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2A-과제번호)

사업명	선정 연도	사사표기 방법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A-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2A-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2A-과제번호)
일반공동 연구 지원사업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우수학자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4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42-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저서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4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42-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4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42-과제번호)
	2012	국문표기 시	이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인문저술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81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812-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저서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812-과제번호)

사업명	선정 연도	사사표기 방법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NRF-2010-812-과제번호)
저술출판 지원사업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81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812-과제번호)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토대기초 연구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22-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22-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저서는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22-과제번호)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413-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KRF-2009-413-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413-과제번호)

사업명	선정 연도	사사표기 방법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과제번호)
		영문표기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413-과제번호)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71-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71-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71-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0-371-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71-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71-과제번호)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명저번역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421-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421-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21-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421-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21-과제번호)
		영문표기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421-과제번호)

사업명	선정 연도	사사표기 방법	
사회과학 지정주제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8-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328-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8-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28-과제번호)
한국 사회기반 연구 지원사업 (SSK)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30-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30-과제번호)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보호학문 분야강의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551-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551-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551-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551-과제번호)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 지원사업	2009	국문표기 시	이 논문(저술)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013-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9-013-과제번호)
	2010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013-과제번호)

사업명	선정 연도	사사표기 방법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NRF-2010-013-과제번호)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013-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NRF-2011-013-과제번호)
대학연구 인력 국제교류 지원사업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013-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013-과제번호)
인문한국 지원사업 (HK)	2009 ~ 2011	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한국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사업코드-과제번호)
		※ 인문분야(361), 해외지역분야(362)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해당 사업코드 : 인문분야(361), 해외지역분야(362) ※ HK연구인력의 성과물은 일정 유예기간 동안('12년 출판/게재물까지) 기존 표기 방식(소속 및 직급을 'HK교수/HK연구교수' 로 명시)도 인정함	
신흥지역 연구 지원사업	2012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2012년부터 사사표기는 연구사업통합시스템 도입으로 과제번호에 선정년도와 사업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NRF-과제번호)로 표기함

94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 주저자(교신저자) 표시 방법

Q 질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모든 결과 논문에 연구책임자가 주저자(교신저자)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응답

공동연구의 경우에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에 연구책임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5 공동연구 전원 저자 참여시 제출 의무 이행 여부

Q 질의

2009년 선정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1년 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원 전원이 저자로 참여하여 논문 게재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응답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09년 공동연구 단년과제의 연구결과물은 2편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하고,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보조원 제외)가 연구결과발표물 중 최소한 1회 이상 저자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2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96 연차평가 지원 중단시 신규 과제 신청 가능 여부

Q 질의

신청제한에 관한 한국연구재단의 내부규약에 대하여 한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 중 기초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일반연구'(2009사업; 2년 사업) 1차년도 연차보고서가 Fail(2010년)되었을 경우, 향후 다른 사업 신청 시 제재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A 응답

연차평가에서 Fail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다른 사업을 신청하시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Fail로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의 제출 기한이 당겨집니다. 다년과제 3년과제의 경우 연구결과논문 제출 기한은 3년의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2년 과제가 연차평가에서 Fail로 1년만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 1년차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내에 결과보고를 하여야하고, 2년이내에 논문을 발표하고 제출을 해야합니다. 만일 위 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모두에게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97 논문 별쇄본 필수 제출 여부

Q 질의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 전산시스템에 파일(논문 PDF)만 탑재하면 되는지, 논문 별쇄본을 재단에 직접 제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응답

발행처(학회지 등)에서 게재 확정된 파일<게재 권(호)와 페이지가 기재된 파일(PDF, hwp, Doc 등)>을 탑재시 별도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서 제출시 용량의 제한을 받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공문을 통해 저서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결과물 탑재시 연구자 확인사항

1. 최종결과물이 hwp 나 doc 파일을 등록할 경우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로 별쇄본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별도송부 해야함
2. 최종결과물이 발행처에서 받은 게제확정된 pdf파일인 경우 – 별쇄본 별도송부 필요 없음
3. 최종결과물에 사사표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사유서 공문으로 제출해야함
4. 연구과제명과 논문제목이 다를 경우 최종결과물 온라인 탑재시 제목변경사유란에 체크 후 사유서 작성해야 함

98 번역과제 판권 출판사 귀속 여부 및 번역자 인세 지급 방법

Q 질의

명저번역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출판을 준비중에 있는 연구자입니다. 번역과제가 5년간 판권이 출판사에 귀속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인세는 5년간 번역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요?

A 응답

동사업은 번역지원의 결과물(번역도서)의 초판 발행일로부터 5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소유하며, 이후에는 번역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세는 2000부까지는 번역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나, 2000부 이상 발행할 때 인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로열티가 없는 경우는 10% 지급하며 로열티가 있는 경우는 12%에서 로열티를 제한 인세를 번역자에게 지급합니다.

99 우수논문지원사업 연구비 지급 방법

Q 질의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연구비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기타소득세를 공제한후 지급하면 되는지요?

A 응답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연구자 지원비는 편당 500만원으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과세해야 하므로 세금을 공제한 후 일괄 지급하시면 됩니다.

행정용어 도움말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가 맞을까?
"연구기획, 과제선정, 관리, 평가"가 맞을까?

쉼표에는 반점(,)·가운뎃점(·)·쌍점(:)이 있고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가운뎃점(·)
① 단어를 열거할 때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②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가운뎃점을 쓴다.(3·1운동)
③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 (총괄·조정, 조사·연구, 지도·감독, 심사·분석, 조정·협의)
④ 업무상의 선후관계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는 "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수립·시행, 기획·입안, 수집·분석, 입안·운영)

■ 반점(,)
① 어구를 열거할 때 반점을 쓴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의 확인 및 최종성과의 종합)
②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절 사이에 반점을 쓴다.
※ 가운뎃점과 반점의 구분 사용법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반점을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개 단어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 쌍점(:)
① 내포되는 종류를 열거할 때 쌍점을 쓴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② 소표제 뒤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제17조(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인감대장 : 영구

100 연구수행확인서 발급방법 문의

Q 질의

2012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가요?

A 응답

예,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살펴보는 연구수행확인서 발급방법

- ❶ 이력 버튼을 클릭 합니다.
- 과제수행확인서/ 연구과제참여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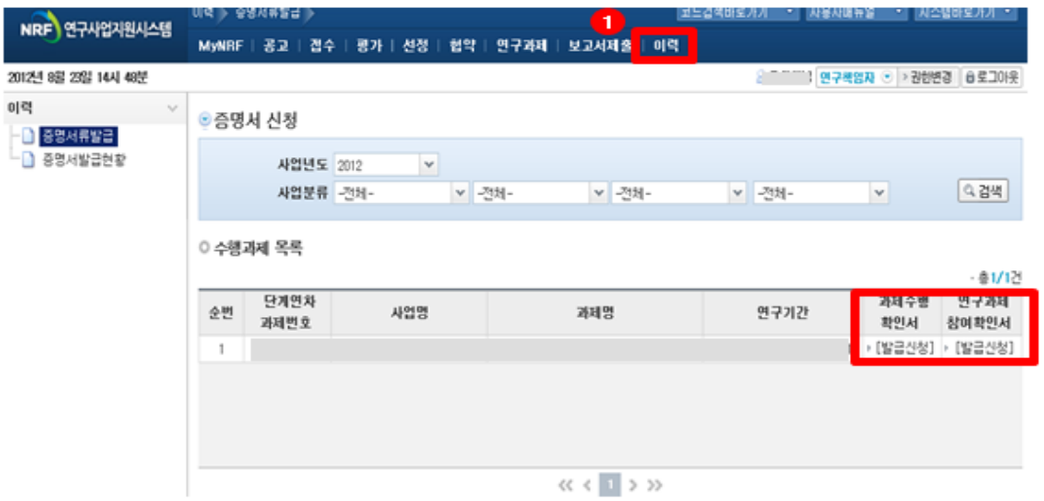

-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 제출처/ 용도 및 목적을 입력하고 ❷ 발급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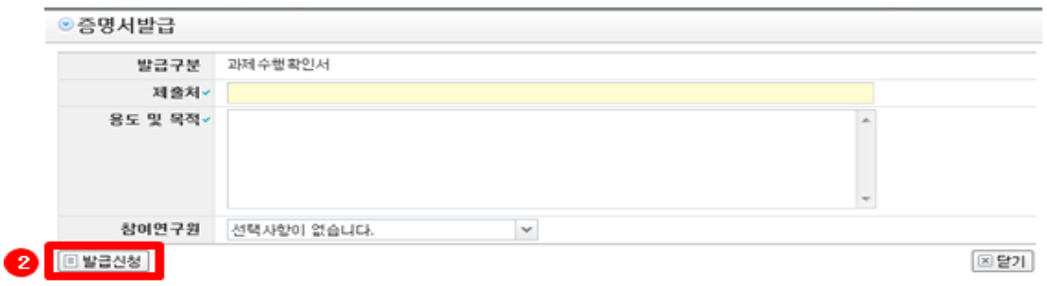

▪ 이력 > 좌측 증명서 발급현황 > ❷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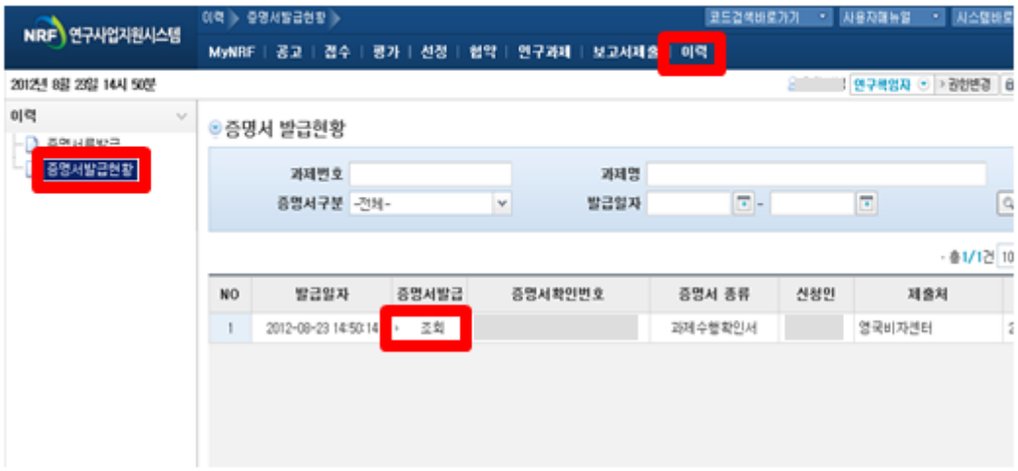

▪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확인서가 조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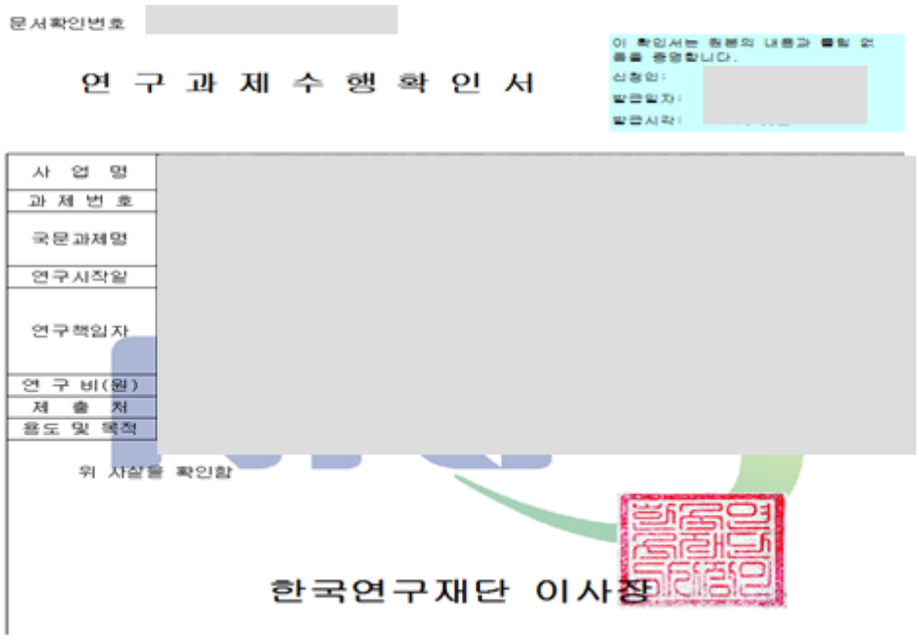

제5장

부록 : 규정

「학술진흥법」

[시행 2012. 1.22] [법률 제10877호, 2011. 7.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시행일 : 2012.1.22] 제2조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3조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관리한다.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시행일 : 2012.1.22] 제4조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1.22] 제5조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1.22] 제6조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7조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1.22] 제8조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1.22] 제9조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0조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1조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2조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3조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ㆍ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4조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5조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6조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7조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

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8조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시행일 : 2012.1.22] 제19조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20조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22] 제21조

제22조(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시행일 : 2012.1.22] 제22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 2012.1.22] 제23조

부 칙 <제10877호, 2011. 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1.22) (대통령령 제23521호, 2012. 1.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 사용 · 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학술활동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술활동 결과 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및 참여인력 등 학술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7.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학술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학술 교류와 협력, 우수도서 보급, 인력

양성, 시설·기자재 지원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이 아닌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의 학술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학술활동 계획 등 협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제5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경우 지체 없이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①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업무 기간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학술표준분류표의 관리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3521호, 2012. 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비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정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1호
개정 2010. 1.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0호
개정 2011. 2.1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하 "학술연구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자와 학술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학술연구를 주관하거나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정액연구과제"라 함은 이론중심의 연구과제 등 연구비 소요가 크지 않은 과제에 소규모 일정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비 정산절차를 간소화한 과제를 말한다.
5. "연구성과"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로 발생된 모든 성과를 말하며, "연구성과물"이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연구결과보고와 연구결과물 및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등을 포함한다.
6.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분야(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 체육학) 및 그 응용분야 연구지원사업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연구지원사업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4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목적)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목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자의 전문성 유지·발전

2. 학술연구기반구축
3. 연구자 및 학문분야 간 공동연구 촉진
4. 학문의 다양성 유지 및 촉진
5. 학술연구와 사회적 수요의 소통 촉진
6. 학술연구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적

②제1항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은 제13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훈령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6조(심의위원회) 삭제 <2011.2.11>

제7조(추진위원회)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9>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별 과제조정 관이 된다. <개정 2010.1.29>

⑤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2.11>

②추진위원회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2.11>

제9조(경비지급) 추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1>

제10조(과제조정관)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계획서 검토
3. 연구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추진위원회의 운영
8. 기타 연구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제11조(전문기관) ①장관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한국학중앙연구원」및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0.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 등의 연구비의 관리
2. 학술연구지원 관련 정책연구
3. 학술연구지원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체결, 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지원 결과물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7. 학술연구지원 성과의 보급·확산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주관연구기관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학술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및 연구부정 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4.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결과 보고
5. 연구비의 중앙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7. 「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81호)」에 의한 대학(원)생 등의 정보관리 및 보고
8.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및 연구윤리 확보
3. 참여연구원의 선정·관리 및 감독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및 제출
8. 연구성과 등록 및 이용허락
9.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각종 보고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사업 계획의 수립, 심사, 선정 등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지원사업별 추진계획
3. 지원사업별 투자계획
4. 학술연구 관련 주요 통계 조사 계획
5. 지원사업별 성과 평가 계획 등

제14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기획과제 추진) 장관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 기획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3.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4.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5조(사업공고)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술연구지원 사업계획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4. 연구지원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

제16조(연구지원 신청 및 연구비 산정) ①학술연구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연구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
6. 기타 학술연구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한다. 다만, 사업별 신청요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을 신청할 때 연구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지원대상 심사)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학문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지원대상을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심사·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지원대상 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지원대상의 선정)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지원대상을 심사·선 정하는 때에는 연구역량과 계획의 우수성외에도 학문분야별 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규모별, 연구기관별, 지역별, 성별 등의 균형과 형평을 고려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예비선정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전문가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1>

④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활용방안, 이의신청 및 연구지원 대상의 중복성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제 5 장 협약체결 등

제19조(협약의 체결)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연구지원대상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과 연구참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1. 연구계획서
2.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4.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추진하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③다만, 전문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20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1.2.11>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 및 다년과제의 경우 당해 학술연구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변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21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참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연구참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교부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비 관리 등

제22조(연구비 중앙관리) ①연구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기자재 등)의 귀속 및 공동사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 등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중앙관리를 위해 제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간접비 비율결정에 반

영할 수 있다.
⑧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연구비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연구비의 사용) ①연구비는 별표1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초 직접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목적과 내용을 고려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예산변경 시 연구책임자는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비는 예산변경을 할 수 없다.
⑤당초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된다.
⑧기타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구비의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연구결과보고 이행 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②연구비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다만, 개인 신용카드 영

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③대학 및 연구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전체 집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연구비 사용내역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1>
1. 제1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해당연도 연구비 정산결과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1>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최종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과제별 연구비 집행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1.2.11>
3. 다년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연구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연구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연구기간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반납계좌로 집행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다년과제는 연차정산 후에 비목별 이월금액, 이월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으로 이월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⑤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집행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정액연구과제) ①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의 비목중 직접비로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 정산은 카드사용명세서로 대체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결과 보고 등

제28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연구책임자는 다년과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단계 연구계획서

②중간평가(연차 또는 단계)는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하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중간보고 및 평가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1.2.11>
⑥ 제5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29조(연구결과보고)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11.2.11>
1. 연구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5.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연구결과보고를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퇴직 또는 학술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당초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 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진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대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등 연구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결과물 제출)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계획서에 제출된 연구결과물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 SCIE급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②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발표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별표 2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결과발표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구결과물 미제출) ①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재해지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③제1항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

④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을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소명기회의 제공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연구결과보고 이행면제) ①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①장관은 연구성과의 이용·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발표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술정보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지원 정보, 연구참여인력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자 : 5년
2. 연구수행이나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비를 사용한 자 : 5년
3.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년
4.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년

5.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6.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연구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연구지원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1.2.11>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⑧제6항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2.11>

제37조(사후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적용특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60호, 2010. 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번 호	별표 및 별지서식 제목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2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2호서식	위탁사업관리비협약서(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으로 국내연구기관 소속인 자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2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적용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연구 수당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과제당 연420만원이내(월 35만원 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 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별표2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전문기관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전문기관명)-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

별지 제1호서식

학 술 연 구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사업명 :
○ 과제번호 : (O O O-사업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과제명 :
○ 연구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 명칭(주소) 이 사 장 O O O
(을) : 주관연구기관의 명칭(주소) 주관연구기관장 O O O
(병) : 연구책임자의 성명(주소)
(정) : 1. 연구참여자의 성명(주소)
2. 연구참여자의 성명(주소)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목표 및 내용) (병)은 (을)을 통하여 (갑)에게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의 수행) ①(을)과 (병)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정)과 함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병) 및/또는 (정)의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②(병)은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정)은 (을) 및 (병)의 감독권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비의 지급) ①(갑)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연구비를 (을)에게 지급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에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는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되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간보고) (병)은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보고)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5.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갑)은 기제출한 정산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발표물 미제출) ①(병) 및 (정)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재해지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병) 및 (정)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

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제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갑)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갑)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발표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병)과 (정)은 본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발표물 및 주요 연구성과를 (갑)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공개·이용 및 활용에 대해 (갑)에게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갑)은 공개·이용 및 활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병) 및 (정) 또는 (을)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병) 및 (정) 또는 (을)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병) 및 (정)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갑)은 교부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을)과 (병)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및 (정)에 대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자 : 5년
2. 연구수행이나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비를 사용한 자 : 5년
3.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년
4.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년
5.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6.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연구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연구지원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을)과 (병) 및 (정)은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과 (병) 및 (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갑)에 대하여 (을), (병), (정)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 탁 사 업 관 리 비 협 약 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위탁사업의 내용 및 사업 관리비
  ○ 위탁 사업명 :
  ○ 위탁 사업 관리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연구기간 :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을) : (전 문 기 관 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첨부의『위탁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 관리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관리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사정 고려 및 사업 위탁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사업관리비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2. 인건비 잔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신규사업의 신설 등 당초 협약서상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협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일부 사업의 위탁기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변경이나 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등)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중대한 위탁업무처리지침 위반으로 판단 될 때
3. 기타 동 사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약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수탁업무 결과보고) (을)은 『수탁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3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지원내역
2. 수탁사업 관리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사업 관리비 잔액보고 및 처리) (을)은 수탁사업 종료 후 또는 위탁취소 후 수탁사업 관리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을)은 사업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관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갑)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칙운용) (을)은 수탁업무의 시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사항을 정한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갑)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직인)

(을) (전 문 기 관 의 장) (직인)

[별첨1]

위탁사업 계획서(협약용)

(표 지)

사업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 – 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1. 연구의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목적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나.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목 \ 연도	연구비	비율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②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다) 연구수당 : ×명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별지 제3호서식

000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선정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명		연락처	(T) (F)
	당해연도 연 구 비		집행잔액	천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기타

붙임 : 1. 연구원 교체 확인서
2. 연구참여 동의서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변경후)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_____ (인)
주관연구기관장 : _____ (직인)

<붙임1>

연구원 교체 확인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교체(추가) 사유

20.　　.　　.

교체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규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붙임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본인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연구참여 예 정 자	소 속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직 위	
	연구참여구분		연락처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붙임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 구분	소 속 성 명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 구 책임자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 교수)			
공 동 연구원 (일반공동)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 구분	소 속 성 명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 구 책임자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 교수)			
공 동 연구원 (일반공동)			
공 동 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원,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알면 쉬워지는 연구관리 Point 100

발행일 : 2012년 11월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집필진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문덕현, 박재간, 구자문